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와 2015년 7월 24일 상호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대상으로 소방특약 업무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550여건 보험 가입하였고, 이 중 6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4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목 차

- 소방 특약보험 안내
- 업무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 업무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서
- 업무배상책임보험 변경업무 절차 안내
- 업무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 업무배상책임보험 약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포산인스빌 대리점 대표 곽봉조

Tel. 02)756-3686 / Fax. 02)756 -3687

협회 총무팀 및 회원지원팀 02)532-1191

---

## [소방 특약보험 안내]

□ 소방특약 업무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최적의 보상조건** : 점검중 사고나 점검 이후의 사고 모두 보상  
관리대상인 소방시설물에대한 손해도 보상  
소방용 가스, 물 또는 소방용 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사고 보상
- **저렴한 보험료** : 협회와 업무협약으로 할인이 적용되어 보험료 절감
- **간편한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로 즉시 가입 가능

□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은 소방시설관리업에 부적합한 보험입니다.

### 1. 가입조건 및 보험료

- 가입조건 및 보험료는 매년 변동되오니 현행조건을 아래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 2.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팩스 제출
- 납부계좌 및 납부금액 안내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일 24시부터 1년간 보장

### 3. 가입문의처

- 문의처 : 삼성화재(주) 채널영업부 / (주)포산인스빌 대표 광봉조

Tel. 02-756-3686 / Fax. 02-756-3687

※ 보험약관을 포함한 상세사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 손해배상책임보험명 : 업무배상책임보험
- 담보내용 :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 기재된 담보업무 수행 중 피보험자의 과실, 실수, 태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
- 보상하는 손해

		보상 내용	보상한도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및 보험공동부담비율을 초과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비용 손 해	소송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공탁보증보험료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 후 손해 방지·경감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행한 고의, 사기, 범죄행위, 위법행위, 불법적 탈루행위, 의도적인 부정직한 행동으로 생긴 손해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대상업무가 아니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또는 서비스 수행으로 생긴 손해 (※ 공사·감리 등을 제외한 소방시설관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또는 서비스 수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함)
3.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
4.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가중시키는 계약, 합의, 약정 또는 품질보증, 하자담보로 인한 손해
5. 예상이익, 손익감소, 매출감소, 생산손실, 비즈니스 기회손실, 데이터손실로 인한 손해
6. 명예훼손, 인격침해,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비밀 폭로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7.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된 자에 의하여 판매, 공급, 제작되는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9. 업무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 또는 시간을 초과하여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손해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 손해 및 보험가입 이전에 유효한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알린 상황과 관련된 손해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13. 소방용 물질의 누출로 인한 오염 및 오염제거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한도 (1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꼭 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서**

가입 안에 (√) 하세요 (1사고당/1회사당 보상한도)	• 가입금액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3억 <input type="checkbox"/> 1억/3억 <input type="checkbox"/> 2억/3억 • 자기부담금 <input type="checkbox"/> 60만원 <input type="checkbox"/> 1백만원
회 사 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 _____ / Fax : _____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mail : _____
기술인 성명	주 민 번 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총 보험료	₩ _____

▶ 입금계좌 : 예금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입금은행 : \_\_\_\_\_ )  
 (원하시는 입금 은행을 주시면 가상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 1인당 연간 보험료 = 기본보험료 표 참조

▶ 문의 및 연락처 : 삼성화재, 광봉조 (TEL : 02-756-3686 / FAX : 02-756-3687)

※ 보험가입시 소방기술인력연명부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최초 가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업무배상책임보험 변경업무 절차 안내

### 1. 계약 내용

- ◎ 보험계약자 : 가입회사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 피보험자 : 가입회사 (보험가입자)
- ◎ 보상한도 및 가입자 명세 : 보험증권 참조

### 2. 변경업무 처리 방법

(아래의 변경업무 요청시 공문 또는 업무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자 교체
  - 변경내용(탈퇴자 및 교체가입자의 성명/주민번호)을 공문으로 FAX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가입
  - 추가 가입자의 성명/주민번호를 공문으로 FAX통지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십시오.
  - 보험료는 매일 변동되오니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자 탈락
  - 탈락가입자의 성명/주민번호를 공문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송금 받으실 회사통장 COPY를 꼭 첨부하시기 바람)
- ◎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변경 사항은 변경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담자 : 곽 봉 조

☎ 02) 756-3686  
010-5213-8537  
FAX 02) 756-3687

## [업무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 사례1)

- 사고일 : 2016년 11월
- 사고내용 : 펌프 점검후 밸브를 잘 잠그지 않아 누수로 집기 오염
- 납입보험료 : ₩342,000.-
- 지급보험금 : ₩10,000,000.-

### 사례2)

- 사고일 : 2016년 6월
- 사고내용 : 소방점검 중 물탱크 뚜껑이 날려 차량을 파손
- 납입보험료 : ₩290,000.-
- 지급보험금 : ₩1,200,000.-

### 사례3)

- 사고일 : 2016년 6월
- 사고내용 : 방호구역이 2개인데 1개로 착각하고 점검하여 소화가스 분출
- 납입보험료 : ₩1,188,000.-
- 지급보험금 : ₩665,000.-

### 사례4)

- 사고일 : 2017년 3월
  - 사고내용 : 소방점검 중 슬레노이드밸브 조작 실수로 소화약제 분출 사고
  - 납입보험료 : ₩1,210,000.-
  - 지급보험금 : ₩81,700,000.-
-

업무배상책임보험

소방시설관리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장대상업무)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장대상업무라 함은 아래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업무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대상업무 및 이에 준하는 업무로 한정됩니다.

1. 피보험자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정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아래의 업무
  - 가. 동법 제29조에서 정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나. 동법 제25조에 정한 관리업자로서의 점검업무
2. 피보험자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동법 제20조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용어의 정의>

소방안전관리업무	<p>「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li> <li>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li> <li>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li> <li>4. 소방훈련 및 교육</li> </ol>
----------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업무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
2. 정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소방, 방화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